

#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(음악영재)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61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2월 6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 사무는 「문화예술교육지원법」 제21조에 근거하여 예술적 소질이 있으나, 경제적 여건 상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 발현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
- 나.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전문지식과 인적·물적 인프라 등을 풍부하게 갖춘 민간에 교육을 위탁·운영 중이며
- 다. 위탁기간 만료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추진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,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저소득층 예술영재(음악영재) 교육지원
- 사업내용 : 음악에 소질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 발굴 및 대학 등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
- 교육기간 : 약 8개월간
- 교육대상 : 저소득층 초·중·고교생 총 100명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

### 나. 주요 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1년(협약체결일 ~ 2017. 12월)
- 위탁업무
  - 교육커리큘럼 기획 및 교수진 구성
  - 교육장소 및 협력시설, 교육 기자재 및 물품 확보
  - 교육생 모집 및 선발, 교육 과정 운영, 평가
- 소요예산 : 400백만원

### 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### 라.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

- 2008.04.22 ~ 2008.12.31 (최초,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)
- 2009.03.01 ~ 2009.12.31 (재계약,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)
- 2010.03.01 ~ 2012.12.31 (3년 재계약,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)
- 2013.03.22. ~ 2014.01.31. (공개모집,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)
- 2014.04.21. ~ 2015.01.31. (공개모집,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)
- 2015.03.01. ~ 2015.12.31. (재계약,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)
- 2016.03.15. ~ 2016.12.31. (공개모집,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)

마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고급 예술교육 대부분이 비용이 높은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어,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재능을 발견하거나 발전시킬 기회가 낮아 공적 영역에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발굴·지원할 필요가 있음.
- 수준 높은 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기획·운영되어야 하고, 우수한 교수진과 교육공간 및 기자재 등이 확보되어야 함.
- 따라서 학생선발 및 교육경험 노하우가 풍부하고, 교수진·교육 공간 등의 인적·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 등 민간에 교육을 위탁·추진함이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  -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  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  -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 매 4회 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「문화예술교육지원법」
  - 제21조(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·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·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2017 서울시 저소득층 음악·미술 영재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(문화예술과-5306, '16.12.06.)
- ※ 작성자 :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임현진 (☎ 2133-2566)